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판결서에 선고기간 도과 이유 기재 등 〉

■ 최기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9745호)

2025. 1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은 정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4
1. 개정안의 내용	4
2. 검토의견	5
3. 관계기관 의견	9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최기상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4. 11.
3. 회 부 일 : 2025. 4.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 제27조제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 이에 따라 현행법은 ‘종국판결 선고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제1심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하고, 항소심 및 상고심의 경우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하였음(제199조).

그런데 민사본안사건의 처리기간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음.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2024 사법연감」의 최근 5년간 ‘민사본안사건 처리기간별 누년비교표’를 보면, 제1심 합의부 사건은 2019년 33.7%의 법정기간(5월) 내 처리율을 보이다가 2023년에는 21.8%까지 감소하였음. 즉, 2023년 기준으로 약 80% 정도의 합의부 사건이 법정기간 이내에 처리되지 못하고 있음. 지방법원 항소심은 2019년 20.8%의 법정기간 내 처리율을 보이다가 2023년에는 14.7%까지 떨어졌음.

처리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사건도 제1심 합의부 사건은 2023년에는 7,026건으로 2019년 3,201건보다 약 2.2배가 증가하였고, 단독 사건도 2023년에는 10,938건으로 2019년 6,298건보다 약 1.7배가 증가하였음.

한편,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 현행법상 당사자가 재판부에 기일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재판부가 어떠한 응답을 할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재판부가 이를 무시하고 응답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은 아무런 효과가 없음.

상황이 이러함에도 법원은 현행법 제199조의 ‘종국판결 선고기간’에 관한 규정을 단순히 ‘훈시규정’으로 보고 있음. 헌법재판소 역시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84조(판결의 선고는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5월 내에 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 있어서는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부터 5월내에 한다)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지만, 이 기간 내에 반드시 판결을 선고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며, 헌법 제27조제3항제1문에 의거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입법형성이 필요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한 어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청구권이 이 헌법 규정으로부터 직접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법원이 ‘신속하게 판결을 선고해야 할 헌법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헌재 1999. 9. 16. 98헌마75 전원재판부 결정).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이 강조하듯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권리이고,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일은 국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서 다른 어떠한 사법개혁 과제보다 시급함.

이에 법원으로 하여금 선고기간을 준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규정하는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당사자가 기일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기일을 지정하도록 하되, 기일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지정할 수 없는 이유를 고지하도록 함(안 제165조제3항).

나. 재판 중 선고기간을 도과하게 된 경우 재판장으로 하여금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이를 변론조서에 적도록 규정함(안 제199조제2항).

다. 선고기간을 도과한 경우, 재판장은 선고 시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도록 함(안 제199조제3항 및 제208조제1항제4호).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당사자가 기일 지정을 신청한 경우¹⁾ 재판장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기일을 지정하되,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이유를 고지하도록 하고(안 제165조제3항 신설),

중국판결 선고기간을 도과한 경우 그 사유에 대한 재판장의 설명 및 판결서 기재 의무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9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안 제208조제1항제4호).

< 조문대비표 >

현행	개정안
제165조(기일의 지정과 변경) ①·② (생략) <u><신설></u>	제165조(기일의 지정과 변경)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기일을 지정하되,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지정할 수 없는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u>
제199조(중국판결 선고기간) (생략) <u><신설></u>	제199조(중국판결 선고기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② 재판 중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u>

1) 「민사소송법」 제165조(기일의 지정과 변경) ① 기일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한다. 다만,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신문하거나 심문하는 기일은 그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한다.

② 첫 변론기일 또는 첫 변론준비기일을 바꾸는 것은 현저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이를 허가한다.

<신 설>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 (생략) 1. ~ 3. (생략) 4. <u>이유</u> 5.·6. (생략) ② ~ ④ (생략)	<u>선고기간을 도과한 경우 재판장은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설명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은 이를 변론조서에 적어야 한다.</u> ③ <u>선고 시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선고기간을 도과한 경우 재판장은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u>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u>이유(선고기간을 도과한 경우 그 이유를 포함한다)</u> 5.·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

2. 검토의견

가. 「민사소송법」 제199조의 해석

헌법 제27조제3항²⁾은 모든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판이 지연되면 당사자의 정신적·육체적·재산적 고통이 가중되므로 헌법은 이를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음.

이에 따라 민사절차에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199조³⁾는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판결

2) 「대한민국헌법」 제27조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민사소송법」 제199조(종국판결 선고기간)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을 선고하고,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고 하여 각 심급별 종국판결의 선고기간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선고기간은 판례에 따라 직무상 훈시규정으로 해석되고 있어⁴⁾ 선고기간을 도과하여도 이를 이유로 소송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며⁵⁾ 재판 지연을 이유로 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되지 않고 있음⁶⁾.

헌법재판소도 이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판결을 선고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법관에게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며, 신속한 재판을 위한 어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청구권이 헌법 규정으로부터 직접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법관이 신속하게 판결을 선고해야 할 헌법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시한 바 있음⁷⁾.

4)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II)」, 2017, p.1583.

5) 당사자는 법원 또는 상대방의 소송행위가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151조에 의하여 그 소송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이 당사자의 이의를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송행위를 무효로 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이라 하더라도 단순한 훈시적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바, 원심이 종국판결 선고기간 5월을 도과하여도 이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99조는 훈시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6) 대법원에서 기록이 접수된지 3년 5개월만에 이루어진 판결선고가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의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원은 종국판결 선고기간을 정한 민사소송법 제199조는 직무상의 훈시규정으로 법원은 위 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지만, 위 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기간 이후에 이루어진 판결선고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음(서울중앙지방법원 2007.5.18. 선고 2006가단199422 등 참고).

7)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84조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지만, 이 기간 내에 반드시 판결을 선고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며, 헌법 제27조 제3항 제1문에 의거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입법형성이 필요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한 어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청구권이 이 헌법규정으로부터 직접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보안관찰처분들의 취소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그 처분들의 효력이 만료되기 전까지 신속하게 판결을 선고해야 할 헌법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1999. 9. 16. 선고 98헌마75).

나. 기일지정신청에 대한 재판장의 기일지정 의무(안 제165조제3항)

현행법 제165조제1항 본문에서 기일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당사자는 기일지정권자인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진행에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기일의 지정을 하지 않고 있는 때에 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기일지정의 신청은 현행법상 지정권자의 소송절차 진행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는데 불과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고⁸⁾,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에 대하여 재판장이 응답할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개정안은 제165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당사자가 기일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기일을 지정하도록 하되, 기일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지정할 수 없는 이유를 고지하도록 하고 있는바,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에 대한 재판장의 기일지정 의무를 명시하고, 기일 미지정 사유를 결정으로 고지하도록 하여 당사자가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⁹⁾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소송절차의 지연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8)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I)」, 2017, p. 751.

9) 「민사소송법」 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당사자는 제225조의 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면이 있다고 보임.

다. 판결서에 선고기간 도과 이유 기재 등(안 제199조제2항·제3항
신설 및 안 제208조제1항제4호)

개정안은 제199조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여 중국판결 선고기간을 도과한 경우 그 사유를 재판장이 설명하고 이를 변론조서에 기재하도록 하며, 선고 시 선고기간 도과 사유를 판결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제208조제1항제4호¹⁰⁾의 판결서 기재사항 중 ‘이유’에 선고기간을 도과한 경우 그 이유를 적도록 명시하고 있음.

이는 현행법상 중국판결 선고기간이 훈시규정으로 해석됨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국판결 선고기간을 도과한 경우 당사자에게 고지·설명하거나 판결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 재판장 등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이러한 의무 부과는 법원이 현행법상 중국판결 선고기간을 준수하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하여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강화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0)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다만, 개정안은 중국판결 선고기간 5월을 그대로 두면서 이를 도과할 경우 재판장의 설명 및 판결서 기재의무 등을 부과하려는 것인데, 중국판결 선고기간 5월은 1960년 민사소송법이 제정되던 당시에 정해진 것이라는 점에서¹¹⁾, 사건의 복잡화·전문화 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재의 재판 현실에 부합하는 선고기간인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나아가, 국가 및 개인에게 미치는 재판의 파급효과, 복잡하고 난해한 사건의 접수 추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총계, 법관 1인이 맡고 있는 사건 수, 재판을 위한 인적·물적 시설 등을 고려하여 중국판결 선고기간을 연장하거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기간 연장 사유를 규정하는 방식 등도 입법적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봄.

3. 관계기관 의견

법무부는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도 민사소송의 이상(理想)으로 ‘신속’을 명시하고 있는바, 선고기간 규정의 규범력을 제고하는 등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임.

11) 법률 제547호 민사소송법[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제184조(중국판결 선고기간) 판결의 선고는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5월**내에 한다. 단, 공소심에 있어서는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4월내에, 상고심에 있어서는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3월내에 한다.

문 의 처
02) 6788-5061